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2024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대리인 B

피 고 C

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0.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6. 15. 접수 제1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1973. 5.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슬하에 E, D, G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7. 5. 30.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H는 2009. 1. 20.경 H의 E에 대한 위 나.항 기재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46045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6. ‘E은 원고에게 1,345,818원 및 그 중 955,362원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14.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마. 망인은 2020. 9. 2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E, D, G은 2020. 9. 21. 망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1340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음에 반하여 E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E,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85년경부터 한복집 등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1994년경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E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관련 법리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편병호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남 해남군 I

[도로명주소] 전남 해남군 J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 주택

1, 2, 3층 각 199.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남 해남군 I 대 393㎡

2. 전남 해남군 K 전 3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L호 철근콘크리트조 58.88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각 80.89/728 끝.

